

에토미데이트(Etomidate)

‘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’ 전환 안내



**에토미데이트, 이제 마약류(향정신성의약품)로
취급·관리 해야 합니다.**

시행일: 2026년 2월 13일(마약류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지정)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시행령

[별표6] 법 제2조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(제2조 제3항 관련)



에토미데이트는 **마약류 취급자만 취급**할 수 있습니다.

- ✓ 에토미데이트의 제조·수입·판매 등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취급자 허가·승인이 필요합니다.
(단 마약류취급의료업자(의사) 및 마약류소매업자(약국개설자)는 마약류 취급을 위해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음)
- ✓ 마약류취급자는 에토미데이트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에토미데이트 취급(구입·판매·조제·투약·양수·양도·폐기 등) 시
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NIMS)에 취급보고 의무가 부여됩니다.

- ✓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(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)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- ✓ 취급보고 누락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※ 취급보고 관련 상세 내용은 뒷면 참조

향정신성의약품은 「**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
따라 "**향정신성**" 문구가 표시되어 공급됩니다.

- ✓ 기존 보유 제품은 수입업체에서 제작·배포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약류로 보관·관리
하시기 바랍니다.



향정신성의약품은 **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**해야 하고,
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를 작성·비치하여 **2년간 보관**해야 합니다.

- ✓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마약류의 저장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등
- ✓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(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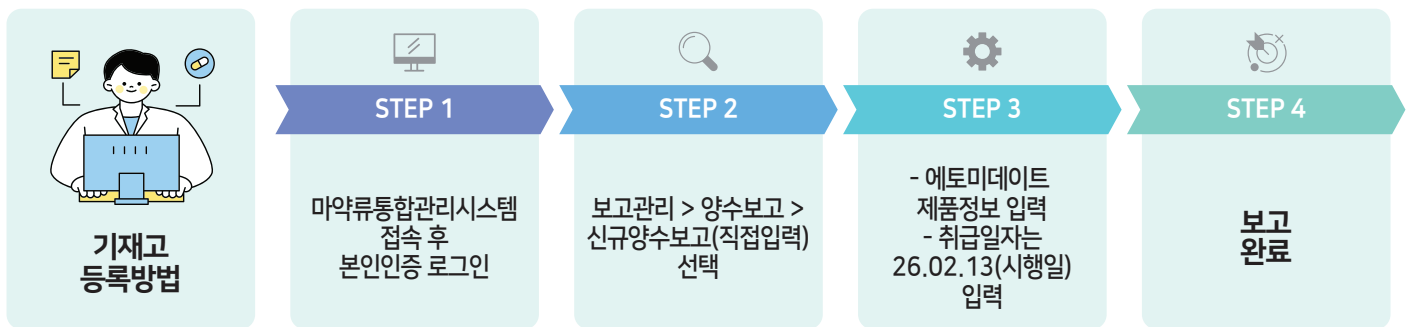
에토미데이트를 이용한 범죄 행위 시 「**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**」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에토미데이트(Etomidate)

취급보고 안내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에토미데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6년 2월13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존 보유재고를 등록 후 취급보고해야 합니다.

※ 마약류 취급이 처음이라면, 회원가입 및 가입 승인 후 취급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

- ✓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NIMS) : www.nims.go.kr
- ✓ 기재고 등록 시 상대 거래처는 '재고등록 거래처' 선택하여 보고

※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해서 취급보고를 하시는 경우, 소프트웨어마다 기재고 등록 방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상세 내용은 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해 확인 필요

회원가입 안내

- 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
- 2 회원 > 회원가입 메뉴 이동
- 3 업체(기관) 사용자 선택
- 4 해당하는 마약류 취급자 선택 후 업체명 조회
- 5 본인인증 진행 후 업체 및 사용자 정보 추가
- 6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회원 승인 처리

※ 연계보고를 할 경우에도 회원가입은 필수

교육 안내

- ✓ 마약류통합관리센터는 매년 상·하반기 마약류 취급보고 교육을 실시합니다.
※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NIMS) → 교육센터 → 교육조회 및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✓ 자세한 취급보고 제도 관련 내용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※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NIMS) → 알림 → 자료실(2025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문의 및 지원

홈페이지 www.nims.or.kr 상담센터 1670-6721